

의안 번호	670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08. 11. 26(수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08. 11. 26(수)
- 위원회심사 : 2008. 12. 8(월)

2. 제안이유

- 도로점용료 표준요율 산정방식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고 표준점용료 현실화를 억제하는 법 규정이 존치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현실화가 어려운 여건이므로,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.
- 도로법 전부개정(2008. 3. 21)에 따른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.

3. 주요내용

- 점용료의 감면 규정 중 “ 「도로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

다” 를 “감면할 수 있다” 로 개정함(안 제8조)

- 인용 법률 조문을 수정하고,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
(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)

4. 근거법규

- 「도로법」 제41조, 제42조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10. 31 ~ 11. 20)

6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전부개정(2008. 3. 21)에 따른 인용법
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
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
-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
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
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제42조의 규정에 “감면할 수 있다”라고 임
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, 우리구 조례는 “감면한다”라고
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은
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
- 다만, 현행 조례규정상 점용료 50% 감면대상인 전주의 경

우 향후 조례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점용료 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과, 전주가 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도 로 법

[전부개정 2008.3.21 법률 제8976호]

제41조(점용료의 징수)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(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)는 대통령령으로,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2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2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3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
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